

베트남 『黎朝刑律』의 체재와 내용

— 唐律의 繼受와 관련하여 —

유인선*

목 차

- I. 서론
- II. 黎朝刑律의 편찬과정
- III. 黎朝刑律과 중국법
- IV. 黎朝刑律과 관습법
- V. 黎朝刑律과 사회적 신분
- VI. 관습법의 내용
- VII. 관습법과 군주권
- VIII. 결론

[국문요약]

『黎朝刑律』은 현존하는 베트남 最古의 법률이다. 이 법은 최근 연구에 의해 黎朝 聖宗 (1460-1497) 때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黎朝刑律』은 그 체재와 내용에서 중국법, 특히 唐律을 繼受하였다. 모두 15장 중 10장이 당률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총 722 조문 중 314 조문이 당률에 있는 것이다.

『黎朝刑律』은 중국법을 계수하면서도 또 다른 일면 관습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15장 중 3장은 상속, 토지거래, 香火田에 관한 것으로 당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722 조문 중 400조문 이상이 『黎朝刑律』에만 있는 고유 조문이다.

오컨대, 중국법을 계수한 것들은 군주에의 충성이라든가 유가도덕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

*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科 교수

루는가 하면, 고유한 측면은 농민의 일상생활이라든가 토착 관습에 관한 것들이다.
[주제어] 聖宗, 당률, 명률, 五刑, 十惡, 八議, 관습법

I. 서론

베트남 전근대사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중국문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베트남의 전통문화에 두 개의 상이한 요소, 즉 베트남 고유의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특히 중국문화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고대로부터 베트남사회에 내재했던 것인데 반하여, 후자는 베트남이 그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오래 동안 접촉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 말 漢武帝에 의해 정복된 이래 천 년 이상을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놓였었다. 뿐만 아니라 10세기 중엽에 독립을 되찾은 후에도 19세기 말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는 이른바 『朝貢制度』의 이름 아래 중국과 밀접한 문물제도는 끊임없이 베트남으로 흘러들어와 정치·경제·법률·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국 문물제도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베트남의 고유문화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도나 관습 등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전통법에 자기네의 고유한 관습법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법제도가 혼합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이의 분석을 통해 중국문화의 영향문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베트남의 전통법에서 고유의 관습법과 중국의 법제도가 반영된 부분들을 추출하였으며, 다음에 두 법을 서로 비교하여 법의 정신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끝으로 양자가 성격상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병존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심적인 자료가 된 것은 『國朝刑律』(Quoc Trieu Hinh Luat, 六卷), 일명 『黎朝刑律』(Le Trieu Hinh Luat)이다.¹⁾ 『黎朝刑律』은 현존하는 베트남 최고의 법전으로, 黎朝時代(Le, 1428~1788)의 기본적인 법이었다. 이 법에는 베트남 고유의 관습이 반영되어 그 영향력이 黎朝時代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베트남 전통법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黎朝의 뒤를 이은 阮氏王朝(Nguyen, 1802~1945)에서도 왕조 개창 직후인 1812년 『皇越律例』(Hoang Viet Luat Le)라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오늘날에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졸속함 때문인지 그 내용은 중국의 『大清律』을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黎朝刑律』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관습법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법전은 오늘날 베트남의 관습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黎朝刑律』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08년 당시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의 원장이던 끌로드 메뜨르(Claude E. Maitre)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일부는 이미 몇 년 앞서 潘輝注(Phan Huy Chu)의 『歷朝憲章類誌』(Lich Trieu Hien Chuong Loai Chi)에 있는 『刑律誌』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다.²⁾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면서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재판이었다. 베트남인의 재판을 위해 관습법을 알 필요성에서 레이몽 드루스탈(Raymond Deloustal)은 『刑律誌』의 佛譯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黎朝刑律』이 발견되자 그는 전자를 참조해 가면서 후자의 번역을 완성하였다.³⁾ 黎朝의 법률은 바로 이 번역판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1) 原題는 『國朝刑律』이고 후대의 版本에는 『黎朝刑律』로도 되어 있다.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는 후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2) 潘輝注, 『歷朝憲章類誌』, 49卷(東京: 東洋文庫所藏本) x-76, 卷34-37.

3)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vol.8 (1908), pp.177~220 ; vol.9 (1909), pp.91~122, pp.471~491, pp.765~786; vol.10 (1910), pp.1~60, pp.349~505 ; vol.11 (1911), pp.25~66; vol.12 (1912), pp.1~33; vol.13 (1913), pp.1~59; vol. 19 (1919), pp.1~81 ; vol.22 (1922), pp.1~35.

II. 『黎朝刑律』의 편찬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黎朝刑律』은 오늘날 남아 있는 베트남의 법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黎 왕조에 앞서 李朝(Ly, 1009~1225)와 陳朝(Tran, 1225~1400)에서도 각각 刑書를 제정하여 반포하였었다. 李朝는 제2대인 太宗(Thai Tong) 明道元年(1042)에 『刑書』(*Hinh Thu*, 三卷)를 제정하였으며,⁴⁾ 陳 왕조에서는 건국 직후인 초대 太宗(Thai Tong) 建中 6년(1230)에 『刑律』(*Hinh Luat*, 一卷)을 편찬하고, 제7대 裕宗 紹豐 元年(1341)에 전술한 『刑律』과 그 후의 법령들을 참고하여 새로이 『刑書』(*Hinh Thu*, 一卷)를 만들었다고 한다.⁵⁾ 그러나 이들 법전은 오늘날 그 이름만이 전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黎朝는 건국 당초부터 법전의 편찬에 주의를 기울였던 듯하다. 『歷朝憲章類誌』의 『文籍誌』나 黎貴惇의 『大越通史』(*Dai Viet Thong Su*) 『藝文志』에는 모두 제2대인 太宗의 大寶年間(1440~1442)에 阮廌(Nguyen Trai)에 의해 『律書』(*Luat Thu*, 六卷)가 제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⁶⁾ 潘輝注는 『律書』의 제정과 관련하여 『刪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보면 阮廌의 법전은 이전 왕조들의 법을 상당히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오늘날에는 전하여 지고 있지 않다. 『律書』이후로는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고 법제도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들만이 이곳저곳에서 散見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黎朝刑律』은 현존하는 베트남 최고의 법전인 것이다.

『黎朝刑律』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편찬연대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전 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문헌에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歷代憲章類誌』의 『文籍誌』에 “國朝

4) 潘輝注, 앞의 책, 卷33, 『刑律誌』, p.3a 및 卷42, 『文籍誌』, pp.3a-b.

5) 潘輝注, 앞의 책, 卷42, 『文籍誌』, p.4b : 片倉穰, 『陳朝刑法雜考』, 『史學雜誌』 84卷 9號, (東京, 1979.9), pp.30~31.

6) “律書六卷 太宗大寶年間 宰臣阮廌刪定.” 潘輝注, 앞의 책, 卷42, 『文籍誌』, p.4b : Emile Gaspardone, "Bibliographie Annamite,"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vol.34 (1934), p.44.

條律六卷 景興三十年 刪定印行 大約依國初洪德原律.”이라는 기록이 있는데,⁷⁾ 드루스말은 일찍이 『黎朝刑律』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文籍誌』의 『國朝條律』(Quoc Trieu Dieu Luat)과 동일시하고 그 편찬연대를 1777년으로 주장하였다.⁸⁾ 그러나 景興 30년은 1769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드루스말의 주장에는 분명히 착오가 보인다. 한편 에밀 가스빠르돈(Emile Gaspardone)은 1777년에 편찬된 것은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勘訟條例』(Kham Tung Dieu Le)이며, 『黎朝刑律』은 1767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⁹⁾ 가스빠르돈의 주장은 그가 일찍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한 법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분실되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여하튼 가스빠르돈의 주장은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의 비판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사실 1767년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였다. 북부 베트남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鄭(Trinh)氏家에서 鄭楹(Trinh Doanh)이 사망하자 鄭森(Trinh Sam)이 그 뒤를 이어 권좌에 올랐던 것이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지배자들은 통치를 시작하는 첫 해에 새로운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鄭森은 실제로 관리의 직무나 재판 등에 관해 적지않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黎朝刑律』이 1767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응우옌 응옥 후이(Nguyen Ngoc Huy)는 『黎朝刑律』의 편찬연대에 대하여 새로운 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黎朝刑律』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 법전은 1767년 이전에 편찬되어 있었으며 이 때는 전의 것을 다시 펴낸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⁰⁾ 응우옌 응옥 후이에 의하면, 『黎朝刑律』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몇차례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편

7) 潘輝注, 앞의 책, 卷42, 『文籍誌』, p.8a.

8)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91, n.2.

9) Gaspardone, "Bibliographie Annamite," pp.44~45 ; Nguyen Ngoc Huy, "On the Process of Codification of The National Dynasty's Penal Law(Quoc Trieu Hinh Luat)," *The Vietnam Forum*, vol.1 (1983), p.34를 참조할 것.

10) Nguyen Ngoc Huy, 위의 인용논문 및 "Le Code des Le : Quoc Trieu Hinh Luat,"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vol. 67 (1980), pp. 147~220.

찬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법전의 始原이 되는 것으로 전술한 阮鷹의 『刑書』를 들고 있다. 聖宗(Thanh Tong, 1460~1497)때에 이르러 여기에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이 가해져 거의 현재와 같은 체재와 내용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國朝刑律』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도 이 무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黎朝刑律』은 聖宗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간행이 되었는데, 그 때는 새로운 부분이 일부 삽입되던가 혹은 황제의 諱를 피하여 글자의 수정이 있었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黎朝刑律』이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되지 않고 몇 번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이룩되었다고 하는 응우옌 응옥 후이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이 『黎朝刑律』의 구성을 살펴보면 간단히 입증된다. 즉 卷三에 田産章이 있고 연이어 始增田産章과 增補香火令의 두 장이 있는데, 뒤의 두 장은 그 명칭으로 보아 田産章보다 후일에 첨가된 것이 분명하다. 田産章의 규정들은 黎利(Le Loi) 즉 太祖(Thai Tô, 1428~1433)에 의해 제정되었고¹¹⁾ 始增田産章 내의 법령들은 제3대인 仁宗(Nhan Tong, 1443~1459)때에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¹²⁾ 그렇다면 田産章은 이미 阮鷹의 『刑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始增田産章은 聖宗 때의 증보작업에 의해 더하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增補香火令에 들어 있는 13개 법조문 중 첫 4조는 각각 1462년, 1511년, 1483년, 1517년에 제정된 법령이고 보면¹³⁾ 이들은 아마도 莫氏政權(Mac, 1527~1592)이 물러나고 黎氏의 復辟이 완성된 후에 『黎朝刑律』이 새로이 간행되면서 삽입된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9개조는 增補參酌校定香火라 하여 별개의 항목 속에 넣을 정도이니, 앞의 4조문보다도 나중에 첨가된 것이 틀림없다.

결국 『黎朝刑律』은 후대로 가면서 飜刻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보완작업이 뒤따랐던 것이다. 1767년 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潘輝注는 분명히 ‘刪定’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기존의 『黎

11) 潘輝注, 앞의 책, 卷35, 『刑律誌』, p.25a;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0), p.392.

12) Nguyen Ngoc Huy, "Le Code des Le," p.195 및 "On the Process of Codification of The National Dynasty's Penal Law," p.43.

13) 388조, 389조, 390조 및 391조 『黎朝刑律』, pp.70a~71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0), pp.500~503. 『洪德善政書』(Saigon, 1959), pp.14~16 참조.

朝刑律』에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보완이 가해져 새로이 간행되었던 것 같다.

附記해 둘 것은 후대의 수정과 보완은 새로운 조문들을 추가할 뿐 기존의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黎朝刑律』내에 왕조 초기에 만 있었고 후대에는 폐지된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한 예로, 지방행정 단위인 路는 1466년 府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에 촌락의 장인 社官의 명칭도 社長으로 바뀌었는데, 『黎朝刑律』은 여전히 路·社官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⁴⁾

Ⅲ. 『黎朝刑律』과 중국법

『黎朝刑律』은 전부 15장 722조로 되어 있다. 드루스팔의 번역본에는 721조로 되어 있지만, 이는 그가 잘못하여 제218조 다음에 있는 한 조를 빠뜨리고 번역하지 않은 때문이다.¹⁵⁾ 각 장의 명칭과 조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1. 名例: 1조-49조(계 49조) | 9. 姦通: 401조-410조(계10조) |
| 2. 衛禁: 50조-96조(계 47조) | 10. 盜賊: 411조-464조(계 54조) |
| 3. 違制: 97조-240조(계 144조) | 11. 鬪訟: 465조-514조(계 50조) |
| 4. 軍政: 241조-283조(계 43조) | 12. 詐僞: 515조-552조(계 38조) |
| 5. 戶婚: 284조-341조(계 58조) | 13. 雜律: 553조-644조(계 92조) |
| 6. 田產: 342조-373조(계 32조) | 14. 捕亡: 645조-657조(계 13조) |
| 7. 始增田產: 374조-387조(계 14조) | 15. 斷獄: 658조-722조(계 65조) |
| 8. 增補香火令: 388조-400조(계 13조) | |

14) Nguyen Ngoc Huy, "Le Code des Le," pp.156,169 및 "On the Process of Codification of the National Dynasty's Penal Law," pp.41~43.

15) 드루스팔의 佛譯에서 누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秦寫詔旨未及宣 私而興外人通傳者 答伍拾貶一資 卽機密事務者論加", 『黎朝刑律』;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microfilm A. 1995), p.40b.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체제는 始增田産章과 增補香火令의 두 장을 제외하면 이미 聖宗때에 완성되었으며, 후대에는 여기에 약간의 보충이 있었을 뿐이다. 聖宗의 치세는 黎朝 전기간을 통해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대내적으로는 제반 정치제도가 거의 완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남으로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리하여 후일의 군주나 관리들에 의해 그의 치세는 황금시대로 간주되었으며, 그의 제도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黎朝刑律』에서 우선 한가지 느껴지는 것은 이 법이 중국의 唐律을 繼受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률의 계수에 대하여는 일찍이 潘輝注가 지적하였으며, 드루스팔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黎朝刑律』이 당률을 계수했다는 것은 두 법의 체재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당률은 12개장에 조문 수는 모두 502조인데, 그 구성은 名例·衛禁·職制·戶婚·廩庫·擅興·盜賊·鬪訟·詐僞·雜律·捕亡·斷獄의 순으로 되어 있다. 『黎朝刑律』의 違制¹⁶⁾·軍政·田産·始增田産·增補香火令·姦通 등 여섯 장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장은 명칭에서부터 배열순서까지 당률과 동일하다.

『黎朝刑律』은 체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당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상기한 9개 장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상당수는 당률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거나 아니면 형벌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뚜렷하다. 그리고 『黎朝刑律』에 고유한 여섯 장의 조문들도 많은 수는 당률에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黎朝刑律』의 軍政章과 姦通章에 있는 법규들은 적지 않은 수가 당률의 擅興章과 雜律章에서 발견된다(표 1 참조).

『黎朝刑律』은 그 체제와 내용에서 주로 당률을 계수하고 있지만, 당률 외에 다른 중국법도 참조하고 있다. 당률에 없는 『黎朝刑律』의 軍政章·田産章·姦通章 등 세 장은 그 명칭으로 보아 『大明律』을 참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¹⁷⁾ 드루

16) 드루스팔은 違制는 당률에 따라 職制가 옳다고 하였으나, 응우옌 응옥 후이는 違制章의 규정은 職制章에 없는 것도 많으므로 이는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765, n.2 ; Nguyen Ngoc Huy, "Le Code des Le," p.172.

17) 『大明律』은 名例律·吏律·戶律·禮律·兵律·刑律·工律의 七章으로 되어 있고 이는 다시 37개의 소항목으로 세분되었다. 이들 소항목 중에 田宅·軍政·犯奸의 명칭이

스말은 『黎朝刑律』을 佛譯하면서 明律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대략은 밝혀 놓았다. 한편 일본인 학자 仁井田陞은 한 걸음 더 나아가 『黎朝刑律』은 당률과 명률은 물론 唐令과 南宗 慶元時代(1195~1200)의 법령집인 『慶元條法』 및 명률의 副法인 『問刑條例』에서도 받아들인 점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¹⁸⁾ 그러나 구체적으로 『黎朝刑律』의 어떤 조문들이 상기한 중국법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宋代 법제로부터의 영향문제는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중국법을 繼受한 『黎朝刑律』의 조문수

章	總條文數	중국법을 繼受한 조문수		
		唐律	明律	기타
1	49	27(27)	—(—)	—
2	47	16(13)	1(—)	—
3	144(143)*	32(32)	3(1)	—
4	43	11(9)	6(2)	—
5	58	16(16)	7(5)	—
6	32	7(7)	1(1)	—
7	14	1(1)	1(—)	(1)
8	13	—(—)	—(—)	—
9	10	3(3)	3(1)	—
10	54	24(23)	8(6)	—
11	50	36(37)	2(1)	—
12	38	20(21)	6(4)	—
13	92	38(37)	9(5)	1
14	13	11(10)	—(1)	—
15	65	19(19)	6(3)	(1)
總計	722(721)	261(255)	53(30)**	1(2)***

* 괄호 안의 숫자는 드루스말의 조사인.

** 『黎朝刑律』과 明律의 철저한 비교는 드루스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두 조문의 연원에 대해 드루스말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송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법은 963년에 편찬된 『宋刑統』으로 이 법은 송대 전체를 통해 효력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폐지된 적은 없었다. 『宋刑統』은 당률을 그

보인다.

18)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刑法』(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59), 583면.

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아 『黎朝刑律』은 혹 이를 통해 당률을 계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러한 추측은 가능하지가 않다. 첫째는 『宋刑統』이 송대에 계속 효력은 있었다고 하지만, 11세기 이후로는 황제의 칙령들을 모은 編勅에 가리워져 실제로는 참조되지 않은 때문에¹⁹⁾ 『黎朝刑律』의 편찬 때 이것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宋刑統』이 참고되지 않았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는 『黎朝刑律』과 『宋刑統』에 사용된 용어의 차이이다. 『黎朝刑律』은 당률과 마찬가지로 一年服에 해당하는 친족을 ‘期親’이라 하고 있는데 대해 『宋刑統』은 ‘周親’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黎朝刑律』에 대한 송대 법제의 영향은 보다 후의 법전으로부터였다.

『黎朝刑律』의 형벌 중에는 당률에 없는 刺墨과 凌遲에 관한 규정이 있다.²⁰⁾ 능지는 笞·杖·徒·流·死의 五刑 가운데서 사형에 속하는, 즉 生命刑의 일종으로 絞·斬·梟보다도 중한 형벌이다. 중국에서 능지형이 처음 생긴 것은 遼代이며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형벌로 확정되었다고 한다.²¹⁾ 仁井田陞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黎朝刑律』에 송대 법제의 영향이 보인다고 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능지형이 처음 사용된 것은 陳朝時代였다.²²⁾ 그러므로 『黎朝刑律』의 능지형은 陳朝를 통해 송의 제도가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黎朝의 법이 송대의 제도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자목의 경우를 보아도 명백하다. 중국에서 자목은 위진남북조시대까지 하나의 형벌제도였으나 수와 당에 이르러서는 일시 철폐되었다. 그러다가 송대에 다시 부활되어 청조 말까지는 변화가 없었다.²³⁾ 베트남에서 자목이 형벌로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李朝 때부터였으며 이어 陳朝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²⁴⁾ 결국 『黎朝刑律』의 자목은 능지나 마찬가지로

19) 曾我部靜雄, 『中國律令史の研究』(東京, 1971), 35~45면.

20) 『黎朝刑律』 5a면;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102~103면.

21) 仁井田陞, 앞의 책, 156~165면; Bodde and Morris, *Law in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p.94~95.

22) 片倉穰, 앞의 글, 35면.

23) Bodde and Morris, op.cit, p.96; 仁井田陞, 앞의 책, 115~117면.

24) 片倉穰, 『ベトナム李朝刑法考』, 『史學雜誌』 82卷 11號(東京, 1973.11), 47~48면 및 『陳

가지로 송대의 제도가 李·陳 두 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요컨대 『黎朝刑律』은 주로 당률을 계수하는 한편, 송률이나 명률로부터도 일부를 수용하였다. 이 법이 시대적으로 보아 동시대인 명률보다는 오히려 그에 훨씬 앞선 당나라의 법을 근간으로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李朝와 陳朝의 법을 이어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끌로드 메뜨르는 드루스팔에 의한 『黎朝刑律』의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黎朝는 10여 년간의 긴 투쟁 끝에 명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때문에 중국문화와의 지적인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이다.²⁵⁾ 이와 유사한 주장은 최근 응우옌 응옥 후이에 의해서도 되풀이되었다.²⁶⁾ 외견상 두 사람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베트남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인과 중국 문화는 별개의 것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말이다. 중국인은 잦은 침입과 정치적 지배시의 가혹한 착취로 인해 베트남인에게 결코 호감을 주는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제도와 문화는 지배의 방편으로서 혹은 지배계층의 자기 소양을 위해 쉽사리 받아들여졌다.

필자가 이미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명의 세력을 성공적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黎利 자신이 명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⁷⁾ 그는 통치 晩年에 御史臺 내의 관직명을 명나라 제도와 동일하게 都御史·副都御史·添都御史로 바꾸었다. 이들은 그 전에는 당의 제도에 따라 侍御史·中承·副中承 등으로 불리워 있었다. 한편, 聖宗대에 이르면 명 제도의 수입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聖宗은 황제권위의 절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洪武帝의 제도가 철저히 모방되었다.²⁸⁾

朝刑法雜考』, 34면.

25) Claude Maitre, "Préface to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vol.8 (1908), pp.180~181.

26) Nguyen Ngoc Huy, "Le Code des Le," p.199.

27) Yu Insun, "Political Centralization and Judicial Administration in 17th and 18th Century Vietnam," *Journal of Asiatic Studies* (Seoul), vol. 23, no.1(1981), p.119, n.8.

28) 聖宗의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는 John Whitmore, "Vietnamese Adaptations of Chinese Government

이리하여 메뜨르와 응우옌 응옥 후이 두 사람의 주장은 『黎朝刑律』이 명률을 계수하지 않은데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黎朝刑律』이 당률을 계수한 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 오히려 李·陳 두 왕조의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黎利는 즉위 후 얼마 아니 되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새로운 법의 제정에는 「古法」을 참조하도록 명령하였다.²⁹⁾ 여기서 말하는 고법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으나, 가스빠르돈이나 레 타인 코이(Le Thanh Khoi)는 그것이 당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지만,³⁰⁾ 李朝와 陳朝의 법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렇다면, 黎利는 전왕조의 법을 계수하면서 이의 수정·보완을 위해 그 근간이 되고 있던 당률을 참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黎利의 신법이 李·陳代의 것을 받아들였음은 형벌제도의 비교에 의해 명백해진다. 黎利의 재위 중에 제정된 법을 보면 貶·笞·刺墨·斷指·徒刑·流刑 등의 형벌이 포함되어 있고, 도형의 종류로는 犒丁과 象坊兵의 기록이 보인다. 이들 형벌은 李·陳代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며, 중국의 제도를 직접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斷指는 중국의 법전으로부터 漢代 이래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며, 犒丁과 象坊兵은 베트남의 고유한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黎朝刑律』은 李·陳 양대의 법을 계승했으며, 그 결과로 중국의 당률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黎朝刑律』은 단순한 중국법만의 계수가 아니고 베트남의 고유한 관습법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tructure in the Fifteenth Century," in *Historical Interaction of China and Vietnam :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mes*, compiled by Edgar Wickberg,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Kansas (1969), pp.1~10 참조.

29) 陳荊和 編校, 『校合本 大越史記全書』(東京, 1985), 551면.

30) Emile Gaspardone, "Le Loi," in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vol.1, edited by Carrington L. Goodrich,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vol.1, p.796 ; Le Thanh Khoi, *Le Viet-Nam*, (Paris, 1955).

IV. 『黎朝刑律』과 관습법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黎朝刑律』이 후대의 『皇越律例』와 다른 점은 후자가 중국법의 완전한 모방이었는데 반하여 이 법은 중국법을 계수하면서도 베트남 자체의 고유법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 黎朝 전기간을 통해 이들 두 제도는 병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17세기 후반에 유럽 사회들의 주재원으로 하노이에 체류하고 있던 홀랜드인 사무엘 바론(Samuel Baron)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¹⁾

중국법은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어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민법이나 성문법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이 혼합된 황제의 칙령이나 법령 및 관리들에 의한 명령도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黎朝刑律』의 고유한 측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법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始增田産章과 增補香火令 등의 장에서 명백하다. 始增田産章에서는 재산상속과 토지재산의 거래 등이 중심 문제가 되어 있으며, 增補香火令의 장은 香火田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香火田이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토지를 말한다). 베트남의 재산상속제가 중국의 제도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하여는 이미 필자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³²⁾ 참고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중국에서와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부모의 재산이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 사이에 균분되는 등 일반적으로 여자의 재산권이 존중되었다는 사실이다. 戶婚章은 당률이나 명률에 모두 있지만, 이 장에 있는 법규들은 거의가 베트남 특유의 것이다.

사실상, 『黎朝刑律』은 전체적인 체재에서 보다 개개 법조문의 내용에서 훨씬

31) Samuel Baron,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Tonqueen," in *A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compiled by Awnsham Churchill (London, 1704~1732), vol.6, p.23.

32) 劉仁善, 『越南黎朝社會에서의 家族制度와 財産相續慣行』, 『亞細亞研究』, 24卷 1號 (1981.1), 1~12면.

더 그 고유성이 잘 나타나 있다. 『黎朝刑律』의 722조는 당률의 502조, 명률의 460조와 잘 비교가 되며, 이들보다 200조 이상이나 많다. 그리고 조문들을 면밀히 비교·검토하면 400조 이상이 『黎朝刑律』의 독특한 규정들이 발견된다. 이 규정들을 각 장 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黎朝刑律』에 고유한 조문수

章	총 조 문 수	고유한 조문수
1	49	22 (22)
2	47	30 (34)
3	144(143)*	109 (110)
4	43	26 (32)
5	58	35 (37)
6	32	24 (24)
7	14	12 (12)
8	13	13 (13)
9	10	4 (6)
10	54	22 (25)
11	50	12 (12)
12	38	12 (13)
13	92	44 (50)
14	13	2 (2)
15	65	40 (42)
총 계	722(721)	407(434)

* 괄호 안의 숫자는 드루스탈의 조사임.

이 외에 어떤 조문들은 중국법의 내용을 계수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베트남의 관습에 맞게끔 변형되어 있다. 대표적인 한 예는 十惡에 관한 규정인 제2조에서 발견된다. 十惡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不大敬·不孝·不義·內亂의 10가지를 들고 있는데,³³⁾ 이는 『黎朝刑律』이 중국법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법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不孝의 행위에 관해 『黎朝刑律』과 중국법 사이에는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중국법은 당률이

33) 『黎朝刑律』, 3a~b면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 (1909), pp.97~98.

나 명를 모두 불효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³⁴⁾

謂告言詛罵祖父母父母 及祖父母父母在 別籍異財 若供養有關 居父母喪 身自嫁娶 若作樂釋服從吉 聞祖父母父母喪 匿不舉哀 詐稱祖父母父母死.

『黎朝刑律』의 규정 역시 중국법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지만, 한가지 “祖父母父母在 別籍異財”의 구절을 ‘違背教訓’으로 대치시켜 놓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자녀는 부모의 생존 중이라도 분가하여 자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黎朝法の 현실반영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 예는 제1조의 五刑에 관한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黎朝刑律』의 五刑制는 근본적으로 중국법과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중국법은 五刑의 적용에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黎朝刑律은 이를 구분하여 여자에게는 杖刑과 流刑을 가하지 않았으며, 徒刑의 경우에도 刑을 달리하였다.³⁵⁾ 이는 『黎朝刑律』이 남녀의 신체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전근대 베트남에서 남자들에 비견될만한 여자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³⁶⁾

지금까지 우리는 『黎朝刑律』이 서로 다른 두 법제도, 즉 중국법과 베트남 고유법의 결합임을 보아왔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중국법에서 계수된 내용은 무엇이며, 베트남의 고유한 관습법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34) 『唐律疏議』, 人人文庫 特三, (臺北: 商務印書館, 1969), 19면; 『大明律直解』, 영인본 (서울, 1974), 25~26면.

35) 『黎朝刑律』, pp.2a~3a;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p.91~96; Ta Van Tai, "The Status of Women in Traditional Vietnam," pp.116~118.

36) 베트남 전근대사회에서의 여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劉仁善, 『越南傳統社會에서의 女性의 地位』, 『亞細亞研究』, 25卷 2號(1982.7), pp.167~181 및 Ta Van Tai, "The Status of Women in Traditional Vietnam" *Journal of Asian History*, vol.15, No.2(1981), pp.97~145 참조.

V. 『黎朝刑律』과 사회적 신분

중국의 전통법들은 흔히 형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이들은 “항상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위반사항들을 찾아내서 각 위반사항에 적절한 처벌규정들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³⁷⁾ 것이다. 사실 이들 법전의 조문은 거의가 “X라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Y라는 처벌을 받는다.”³⁸⁾ 식으로 되어 있다. 『黎朝刑律』이 중국법의 이러한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법이 형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原名이 『國朝刑律』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명백하다. 그리고 법은 그 이름에 걸맞게도 첫머리에서 형벌의 종류를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벌은 중국의 五刑制度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들 형벌의 적용에는, 중국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의 동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가족 내에서의 위치 및 범죄행위가 일어난 상황이라던가 그러한 행위가 행해진 수단 등이 고려되어 차등이 두어졌으며,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았다. 위의 세가지 차등조건 중에서 두 번째의 경우가 베트남 전통사회의 고유성이라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그러했듯이, 黎朝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유교적 관념에 따라 사회계층은 이론상 四民, 즉 사·농·공·상으로 구분되었지만, 실제로는 특권계층과 비특권계층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³⁹⁾ 전자에는 황족·관리·지식층 등이 포함되었으며, 농민·기술자·상인 및 천민집단은 후자에 속하였다.

『黎朝刑律』은 이들 두 계층 사이에 법적 신분의 차이를 명백히 그어놓았다. 우선 중국법에서와 같이 ‘八議’라고 하여 여덟 가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즉 황제

37) Bodde and Morris, *Law in Imperial China*, p.30.

38) Sybille van der Sprenkel, *Legal Institutions in Manchu China*, (London, 1962), p.28.

39) 劉仁善, 『越南 黎朝後期の 社會・經濟의 狀況分析』, 『東洋史學研究』, 14輯 (1979), 10~11면.

의 친족, 덕행·재능·공훈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인물 및 고위관리들에게는 특수신분을 인정하여 주었다.⁴⁰⁾ 이들은 일반대중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사형의 혐의가 틀림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사천허가 없이는 형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또 十惡에 해당되는 죄가 아닌 한 언제나 減免의 혜택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인이나 자녀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누렸다. 위의 여덟 가지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관리들이라도 역시 상당한 정도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 형벌의 감면을 받을 특권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권은 관직을 그만둔 후에도 남아 있었다.

특권계층은 비특권계층과의 관계에서도 법률상의 특권을 누렸다. 특권계층의 사람과 비특권계층의 사람 사이에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黎朝刑律』은 중국법과 동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해자의 신분이 낮고 피해자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형은 점차 무거워졌다. 예컨대, 평민들 간의 구타행위는 杖六十에 해당되었는데 비해,⁴¹⁾ 평민이 四品の 관리를 구타하면 형벌은 상당히 중했고 二品官을 구타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무거워 流罪에 처해질 정도였다.⁴²⁾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특권을 갖는다고 하는 계층조직은 어떤 의미에선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배자 자신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를 통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상 특권이란 궁극적으로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에 대한 비특권계층의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또 특권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반란이나 모반 등과 같이 국가와 사직에 중대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경우는 조금의 특권도 인정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黎朝刑律』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에 차이를 두었을 뿐

40) 『黎朝刑律』, p.4a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p.99~100 ; 『唐律疏議』, pp.23~24 및 『大明律直解』, pp.28~29. 劉仁善, 『越南 黎朝後期 社會·經濟의 狀況分析』, pp.11~12 참조.

41) 『黎朝刑律』, pp.84a~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p.1~2.

42) 『黎朝刑律』, pp.86a~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p.7~8.

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상호간의 행위에 대하여도 유교적인 五服制의 개념에 의거하여 형벌을 달리하였다. 五服制 내에서 형벌을 결정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親疏·尊貴·性別의 세가지였다.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범법행위에 대한 尊屬親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는데 비해 卑屬親의 책임은 커졌다. 이와 반대로 양자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존속친에 대한 처벌은 무거웠고 비속친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 구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三從兄을 구타한 자는 제삼자 간의 행위에 대하여보다 한 등급 중하게 다스려졌으며, 반면에 三從弟를 구타했으면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서보다 한 등급이 가벼웠다.⁴³⁾ 다른 한편 再從 이상의 존속친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3자 간의 경우에서보다 2등급이 무거운 형에 처해졌으며, 피해자가 비속친이면 반대로 2등급이 경감되었다.

위의 경우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 및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별이었다. 중국의 지식층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지식인들 역시 「女必從夫」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강조하였다. 부인의 지위라는 것은 남편의 지위에 비할 바가 못 되었으며, 그 결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부인의 폭행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행위보다 훨씬 더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부인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형벌은 遠州에의 유배였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형벌은 일반 상해사건 때보다 3등급이 낮았다.⁴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강조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였다. 효라는 것은 유교적인 가정도덕의 중심사상으로 이에 의해 자녀는 부모에 묶여 있었다.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이나 口頭上의 저주는 고사하고 단순한 불복종 조차 十惡 등의 하나인 불효로 규정되었다.⁴⁵⁾ 이와는 반대로, 부모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녀를 살해하더라도 犒丁의 형박에 받지 않았다.⁴⁶⁾ 제삼자 간

43) 『黎朝刑律』, pp.88a~b;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13. 『唐律疏議』, pp.99~100 참조.

44) 『黎朝刑律』, pp.89a~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p.15~17. 『唐律疏議』, pp.98~99 참조.

45) 『黎朝刑律』, p.36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98.

의 살인행위가 絞刑에 해당하였음을 고려하면 犒丁이 얼마나 가벼운 형벌이었던가가 잘 나타난다. 가정내에서 부인이나 자녀의 이러한 낮은 지위 때문에 남편이나 부모에 대한 이들의 위배행위는 자동적으로 十惡의 범주 안에 들어 여하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黎朝刑律』의 가치관념에서 볼 때, 십악은 가장 혐오할만한 범죄였으며 ‘八議’ 집단조차도 이 범주에 속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률상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중국법에서와 동일하게 『黎朝刑律』에서도 십악에 관한 규정은 제2조로 제1조인 五刑에 관한 조문 다음에 오고 있는데, 이는 십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십악은 크게 두 종류, 즉 국가나 군주에 대한 위배행위와 유교적 가족도덕에 저촉되는 행위로 구분될 수가 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특권계층이건 비특권계층이건 간에 지배자에게 충성을 바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도록 요구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는 충과 효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거니와, 『黎朝刑律』내의 많은 조항들은 충효와 관련이 되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법으로부터 계수된 부분은 바로 이들 충효와 관련된 내용이 주였다. 이하에서는 중국법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黎朝刑律』의 각 장을 간략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衛禁章의 내용은 주로 궁궐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며, 違制章은 종묘사직에 의 제사·궁중예절·관리들의 행동규범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것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軍政章의 주요내용은 군역의 회피문제이고, 戶婚章은 호구조사와 결혼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田產章은 공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始增田產章과 增補香火舍章은 전술한 바와 같이 『黎朝刑律』에 독특한 부분이다. 姦通章 이하 나머지 장들은 당률을 거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며, 다만 雜律章과 捕亡章에 약간 베트남 고유의 규정들이 들어 있을 뿐이다. 이들 장은 『黎朝刑律』에서도 형법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간통·친족상간·살인·도적·폭력·사기·공문서위조·방화·죄인의 체포 및 도주·송사 등에

46) 『黎朝刑律』, p.876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10. 『唐律疏議』, p.101 참조.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개략적인 설명으로부터 중국법에서 계수된 것이 어떤 내용의 규정들이지가 드러난다. 중국법을 계수한 조항들의 극히 일부만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고유한 관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여타는 거의가 궁중예절·관리의 행동규범·군주에의 충성·유교적 가정도덕 및 공공질서 등에 관계되어 있다. 이외 몇몇은 순수히 행정적인 측면, 즉 호적의 작성이나 세금의 부과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군주와 조정을 보호하고 그 세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효까지도 군주에 대한 충성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黎朝刑律』도 중국법의 예를 따라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십악 중의 불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군주에 대한 반란이나 모반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⁴⁷⁾ 요컨대, 법은 군주의 의지였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VI. 관습법의 내용

위에서 우리는 『黎朝刑律』의 722조 가운데 400조 이상이 중국법에는 없는 것들이고, 또 그 외에 상당수는 중국법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黎朝刑律』에 특징적인 이들 규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黎朝刑律』에 고유한 법규는 형벌제도에서부터 토지와 농민의 지배 및 토착의 관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名例章 내의 고유한 조항들은 黎朝와 중국의 형벌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주원인이었다. 衛禁章에서 중국법에 없는 규정이란 외국인에게 노예·토지·무기·동·철·소금·코끼리·말 등의 판매를 금지

47) 『黎朝刑律』, pp.93b~94a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2), pp.29~30 ; 劉仁善, 『越南 黎朝後期の 社會・經濟的 狀況分析』, p.14.

한 것들이다. 違制章의 특징은 호구조사의 보고가 말단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중앙의 부서에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세세히 다루고 있는데 있다. 전투에 임한 장수의 행동규범과 일반 병졸들의 일상적인 복무수칙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黎朝刑律』의 軍政章이 중국법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다. 田產章과 戶婚章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측면은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군주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들을 호족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관한 규정들이다. 다음에 오는 始增田產章과 增補香火令의 두 장이 黎朝法에 고유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盜賊章에는 중국법에 없는 雜犯들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나머지 다섯 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雜律章과 斷獄章으로, 이들 두 장은 대외무역과 소송사건의 공정한 절차 및 신속한 처리를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기본적으로 중국법을 계승하고 있는 『黎朝刑律』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정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4세기 초 이래의 사회적 혼란 위에 20년 간에 걸친 明의 착취 및 對明투쟁을 위한 오랜 전쟁은 베트남사회를 파쇄시켰다. 토지는 황폐하고 농민들은 유산되었으며, 호족들은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私田을 확대하고 유랑민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신왕조를 건설한 黎利로서는 무엇보다도 토지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즉위하기 일년 전인 1427년에 이미 유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생산에 종사할 것을 명령하였다.⁴⁸⁾ 그리고 즉위하던 해에는 호구조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방관들에게 호적을 3년에 한번씩 수정하고 6년마다 이를 대폭 개정토록 칙령을 내렸다.⁴⁹⁾ 또 경작이 가능한 모든 토지는 田簿에 등재케 하는 한편, 이전 왕조의 지배층이나 明軍에 부역했던 인물들의 소유토지는 몰수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田產章 내의 법규들이 黎利의 재위기간에 제정된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黎利의 상기한 정책은 阮應의 『律書』를 통해 『黎朝刑律』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후대의 지배자들에게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48) 『大越史記全書』, p.535.

49) 潘輝注, 앞의 책, 卷29, 『國用誌』, p.6a.

조세수입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농민의 지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黎朝의 정책을 변경시킬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黎朝刑律』내의 토지와 인구에 관한 규정은 黎朝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왕조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지방관들은 농민에게 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그들이 타향으로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였으며,⁵⁰⁾ 또 호구조사 때에는 한 사람의 누락자라도 생기면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⁵¹⁾ 그리고 중앙의 관리들은 지방으로부터 보고 되는 호구조사를 재검토 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만약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부정이 있으면 결코 용서되지 않았다.⁵²⁾ 호족들이 양민을 노예로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보호 하에 두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토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았다.⁵³⁾

黎朝는 대외무역을 통제하여 베트남인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도 허락하지를 않고 오로지 지정된 장소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무역항 중에 대표적인 것은 雲屯(Van-Don)이었는데, 이는 하이퐁(Hai-Phong) 동쪽 약 8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다고 한다.⁵⁴⁾ 雲屯港에 온 상인은 주로 중국인들이었으며, 후에는 유럽인들도 진출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철저한 통제는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여 정부세입을 증가시키자는 뜻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내지까지 진출하면 그들에게 국내사정이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⁵⁵⁾ 베트남은 중국의 빈번한 침입을 겪었고, 明代에는 20년 동안이나 그 지배 하에 놓였었기 때문에 黎朝는 중국에 대해

50) 『黎朝刑律』, p.52a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 (1910), p.349.

51) 『黎朝刑律』, pp.52a~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0), pp.249~250.

52) 『黎朝刑律』, pp.28b~30b;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09), pp.784~787.

53) 『黎朝刑律』, pp.61b~62a 및 pp.64a~b ;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0), pp.378~379, 385, 387.

54) 『黎朝刑律』, pp.110a~111a; Deloustal, "La justice dans l'ancien Annam"(1913), pp.43~45 ; 山本達郎, 『安南の貿易港雲屯』, 『東方學報』, 9冊 (東京, 1939), pp.287~289 참조.

55)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1975), p.282.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예·말·코끼리·무기 등의 대외판매가 적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금지시킨 것도 주로 중국인을 의식하고 만든 규정이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중국과의 긴장관계 외에 또 다른 한편 남쪽에서는 占婆와의 무력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며, 마침내는 聖宗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占婆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軍政章에서 장졸의 책임과 의무를 자세히 규정한 것은 黎朝 전기의 이러한 군사적인 분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군시의 軍紀 같은 규정들은 혹 聖宗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은 좋은 정부를 만들려는 군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좋은 법이라도 공정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왕조의 운명에 불이익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 聖宗은 누구보다도 유교적 이상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던 군주였다. 그가 재판의 공정을 요구하고 이를 범조문에 반영시켰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상의 정치·경제적인 것들 외에도, 『黎朝刑律』에는 고유한 규정들이 많다. 이들은 베트남사회에 뿌리 깊은 관습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필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했기 때문에⁵⁶⁾ 여기서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우선 『黎朝刑律』의 재산상속법과 香火制度는 베트남사회에 특이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부모 재산의 1/20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녀들 간에 균분되었다. 이러한 상속제는 아들들만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던 중국의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潘輝注도 지적했듯이, 『黎朝刑律』의 규정은 재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⁵⁷⁾ 그러나 단순히 분쟁의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와 노동력과 군역의 공급원인 가정을 안정시키

56) 劉仁善, 『越南黎朝社會에서의 家族制度和 財産相續慣行』 및 『越南傳統社會에서의 女性의 地位』.

57) 潘輝注, 앞의 책, 卷35, 『刑律誌』, p.25a.

자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고유관습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이미 인용된 제2조의 불효에 관한 내용이다. 즉 중국에서와는 달리 자녀는 부모가 생존하여 있을 때라도 분가하여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仁井田陞에 의하면, 독립된 가정의 형성이 이처럼 가능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재산상 독립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⁸⁾ 다시 말해, 자녀가 이미 자신의 독자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그의 분가는 전체 가정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논리다. 여하튼 이는 베트남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의존도는 그만큼 적고 서로 독립성이 강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분가를 인정한 『黎朝刑律』의 규정은 유교적 도덕관념과는 직접 충돌이 된다. 유교의 효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인 복종과 자기 희생적인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독립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행위는 중국법에서 十惡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불효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黎朝刑律』에 고유한 규정을 두게 하였던 것이다.

VII. 관습법과 군주권

黎朝의 법제정자들은 과거를 통해 관리로 선발된, 말하자면 유학적 소양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녀의 분가가 유교의 전통적인 도덕관과 모순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연유로 해서 그들은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黎朝刑律』에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베트남의 관습법을 포함시켰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설명은 베트남의 지배자나 관리들이 자기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17세기의 기록에

58)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奴隸制度法・家族村落法』(東京大學出版部, 1962), pp.533~534.

의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되 된다. 사무엘 바론은 베트남의 지배자들이 “법과 관습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이에 일치시키고 있다.”⁵⁹⁾ 기록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黎朝刑律』내에 모순이 생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이었던 것 같다. 만약 새로운 법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일치하려고 했다면 관습법의 반영은 현명한 처사였다. 왜냐하면 어떤 급격한 변경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黎朝의 법이 비록 군주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이유로 해서 전통과 관습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다음과 같은 15세기의 일화에 의해 입증된다. 聖宗은 1471년 칙령을 내려 유교의 도덕관념을 근거로 부모의 居喪기간에 자녀의 입신을 금지시키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형벌은 杖 100과 遠州에의 유배로 규정하였다.⁶⁰⁾ 그러나 이 칙령은 수년이 아니 되어 곧 철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聖宗의 신하 한 사람이 아버지의 三年喪을 마친 후 자손도 없이 사망한 일이 생겼다. 왕은 이를 듣고 불쌍히 여겨 전에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⁶¹⁾ 여기서 자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입신금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신하의 죽음에서 聖宗은 칙령철회의 구실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이나 관습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될 때는 이를 변경시킨다는 것이 더욱 복잡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문제는 오늘날보다도 전통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또 부부관계라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조상숭배 등등과 같은 관습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웠다. 『黎朝刑律』내의 베트남 고유관습들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 여권대 재산소유권·상속제·토지분배제도 등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59) Samuel Baron,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Tonqueen," p.25

60) 『洪德善政書』, 30면.

61) 武芳琨, 『公暇捷記』,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microfilm A.44), pp.35a~b.

사회적인 관습에 대하여도 지배자는 분명히 고래의 풍속을 변경시킬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풍속은 그의 권력을 유지시키는데 유리했을지언정 불리한 측면은 없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법은 가부장에게 강력한 권위를 인정하여 주고 가족원은 모두 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군주는 강력한 가부장권이 결코 자신과 중앙정부에 유리하지 않음을 간파하고 유교의 이상에 따르면서도 스스로 한계를 정했던 것 같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 독립적인 경향은 그 만큼 가부장권의 약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구태여 고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黎朝의 역대군주는 어떻게 하면 지방세력의 성장을 저지하느냐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중국제도를 충실히 받아들여 지방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고 또 相避制라고 하여 관리를 자기 출신지방에는 임명치 않았었다. 특히 聖宗은 누구보다도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지방에 대해 중앙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가부장권의 강화는 지방호족세력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립적인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유교적 이상에만 얽매어 개혁을 단행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黎朝刑律』에 있는 재산의 균분규정이나 자녀에의 분가허용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은 틀림없이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되어 삽입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의 군주나 법제정자들이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현실적인 일에 보다 관심을 가졌었지 관습과 이념 사이의 어떤 추상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것은 黎朝의 법이 근본적으로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유교적 사회윤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VIII. 결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새로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경우, 그것은 때

로 한 사회를 변형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법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방법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법의 성격을 밝히는 일 역시 그 중요성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사실 법의 성격이 먼저 밝혀져야 그 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법의 실제적 적용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에 관심을 두었다.

『黎朝刑律』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 다시 말해 중국법, 특히 당률을 계수한 부분과 베트남사회의 고유한 관습법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 중국법을 계수한 것은 법률의 전반적인 체제와 유교적인 법정신 및 지배체제와 관련되는 제반 규정들이었으며, 관습법은 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두 법제도의 수용은 『黎朝刑律』내의 규정들 사이에 모순을 가져왔다. 한편에서는 유교의 가정도덕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모순의 원인을 군주의 자기 권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즉 법은 군주의지의 표현으로 그의 권력을 유지·확립시켜주는 수단이었지 유교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도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오랜 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 사회에 끼친 중국문화의 영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상기한 법의 연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었다. 베트남사회에 중국문화가 도입될 때 중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거의 언제나 지배계층이었다. 일반대중이 중국문화와 직접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 따라서 접촉은 항상 지배계층을 통해서였다. 그리하여 지배계층이 중국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중국문화의 영향문제와 직결이 된다. 베트남의 지배계층이 중국문화를 애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외래문화를 수용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베트남사회에 끼친 중국문화의 영향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의 일부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The Format and the Content of Vietnam's Le Code

Yu In-sun*

The *Le Trieu Hinh Luat*, usually known as the Le Code, is the oldest complete legal code in existence in Vietnam. It seems to have been codified first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and revised and enlarged under the reign of Le Thanh-tong(1460-1497), the fourth ruler of the Le dynasty.

The code was modeled on Chinese law, especially Tang Code. Many articles in it are faithful reproductions of those in the Tang and Ming codes. According to my own figures, 314 articles among a total of its 722 were borrowed from or inspired by them, 261 and 53 respectively. Besides the individual articles, there was also the duplication of the Chinese system in the format of the Le Code, which grouped 722 articles under the fifteen categories. Among fifteen, ten categories are identical with those in the Tang Code.

What we have said addresses one aspect of the Le Code: its sinicization. However, the Code has another aspect: its uniqueness, which is of greater importance for our understanding of Vietnamese society. The Le lawmakers were adopting Chinese law and, at the same time, incorporating from their own systems.

The Le Code's uniqueness then is found in three divisions which have no counterpart

*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History, S/V Univ.

in Chinese legal codes. They deal with inheritance and transactions involving landed property and the *huong-boa* property, which was put aside for the upkeep of ancestor worship. The individual articles of the Code reflect its uniqueness far better than its general format. Careful comparison of the articles in the Le Code and Chinese codes reveals that more than 400 articles are unique to the Le Code.

To sum up, the articles borrowed from Chinese legal codes were mainly concerned with loyalty to the ruler, Confucian morality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ose unique to the Le Code touched on the everyday life of the ordinary people and indigenous customs.